## 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도시과

제정 2005 · 1 · 11 조례 제 533호 일부개정 2023 · 8 · 14 조례 제1962호 (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 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) 일부개정 2024 · 9 · 30 조례 제2134호 (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정지역) 시장은 관할지역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(이하 "공장건축가능지역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. 다만,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.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3・8・14〉
  - 1. "계획관리지역"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.
  - 2. "관리지역"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.
  - 3. "공장"이라 함은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    - 가.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사목(1) 내지 (4)에 해당하는 것
    - 나. 화학제품제조시설(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). 다만, 물·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·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.
    - 다. 제1차금속·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
    - 라.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

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

마.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

- 제4조(지정시 고려사항)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광역도시계획, 도시기본계획,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 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  - 2. 주변지역의 토지이용, 교통여건,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  - 3.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, 용수공급시설, 전기·통신·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·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함
- 제5조(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) ①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
  - 2.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
  - 3. 학교·군부대·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
  - 4.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
  - 5. 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·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
  - 6.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
  - ②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. 〈개정 2023・8・14, 2024・9・30〉
  - 1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
  - 2. 「도로법」에 의한 접도구역 · 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
  - 3. 「수도법」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
  - 4.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이내인 지역
  - 5.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이내인 지역
  - 6.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

- 7.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(다만,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)인 지역
- 8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존국유림·보안림·천연보호 림·채종림·시험림·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·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수보호구
- 9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기지구역내. 다만,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0. 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 시된 지역
- 11. 「지하수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
- 12.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지역
- 13.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
- 14.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
- 15. 경사도 20도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이상인 지역
- 16.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
- **제6조(지정규모)**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, 입지수요,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정계획수립) ①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,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,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, 지정위치, 지정면적, 토지이용관계,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8조(주민의견수렴)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

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

을 청취하여야 하고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9조(지정절차)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,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0조(지정·고시)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  - 1. 지정목적
  - 2. 지정면적
  - 3. 입주가능공장의 업종
  - 4. 위치도
  - 5.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
  - 6.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
- 제11조(지정·고시내용의 변경제한)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·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·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설지원)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, 용수공급시설, 전기·통신·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3·8·14 조례 제1962호,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〈2024·9·30 조례 제2134호,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